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[시행 2023. 1. 1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4호, 2022. 12. 21., 일부개정]



산업통상자원부(에너지안전과) 044-203-3982

제25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.

- 1.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(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)로서 제조업 및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
- 2.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
- 3. 휴지(休止)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
 - 가.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
 - 나. 심야전력 전기설비(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)
 - 다. 농사용 전기설비(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4.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
- ② 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.
-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·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(「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」제2조제2호 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 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,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. 다만,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.
- 1.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퍾프용 전기설비
- 2.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
- 3.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(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 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)의 터널용 전기설비
- 4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
 - 가. 동일 산업단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산업단지"라 한다)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일 것
 - 나. 설비용량(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비용량만을 말한다)의 합계가 2천 500킬로와트 미만일 것
-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(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)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
- 「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(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 역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)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

제25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.

- 1.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(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)로서 제조업 및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
- 2.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
- 3. 휴지(休止)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
 - 가.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
 - 나. 심야전력 전기설비(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)
 - 다. 농사용 전기설비(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

해당한다)

- 4.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
- ② 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.
-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·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(「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」제2조제2호 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 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,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. 다만,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4. 22.>
- 1.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
- 2.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
- 3.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[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 격감시 및 제어기능(이하 "원격감시·제어기능"이라 한다)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] 의 터널용 전기설비
- 4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
 - 가. 동일 산업단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산업단지"라 한다)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일 것
 - 나. 설비용량(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비용량만을 말한다)의 합계가 2천 500킬로와트 미만일 것
- 5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(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)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
- 6. 「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(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 역은 시장·군수를 말한다)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

[시행일: 2023. 4. 23.] 제25조제3항제3호

- 제26조(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)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(이하 "대행사업자"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(이하 "개인대행자"라 한다)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- 1.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(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 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)
 - 가.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
 - 나.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. 다만,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
 - 다. 용량 1천킬로와트(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)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
 - 2. 개인대행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(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)
 - 가.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
 - 나.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. 다만,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.
 - 다. 용량 250킬로와트(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)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
- 제26조(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)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(이하 "대행사업자"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(이하 "개인대행자"라 한다)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22. 4. 22.>
 - 1.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(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 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)
 - 가.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
 - 나.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(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 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). 다만,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.
 - 다. 용량 1천킬로와트(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)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

- 2. 개인대행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(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)
 - 가.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
 - 나.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(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 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·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), 다만,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.
 - 다. 용량 250킬로와트(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)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

[시행일: 2023. 4. 23.] 제26조제1호나목, 제26조제1호다목, 제26조제2호나목, 제26조제2호다목

- 제27조(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)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격지·오지 등 산업 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
 - 1.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
 - 2. 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
 - 3. 「도서개발 촉진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지역
 - 4. 「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
 - 5. 그 밖에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

[시행일: 2028. 4. 1.] 제27조

- 제28조(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)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 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 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: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·토목·기계 분야 기능사 이 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・토목・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가.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
 - 나. 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
 - 다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 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
 - 2.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: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 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
- **제29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)**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 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·토목·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
 -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・토목・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3.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·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
 -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·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.
 -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.
 -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30조(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)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.
 -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 4. 22.>
 - 1.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
 - 2.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·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
 - 3. 전기설비의 운전 ·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
 - 4.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· 보존
 - 5.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
 -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.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•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

- 나.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
- 다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
- 7.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· 정기점검 · 정밀점검의 절차,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
- 8.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
-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.

